

한국노동연구원 필수유지업무 노시간담회 열어

KT사측, 전업무 최소유지업무 지정 억지 주장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필수유지업무 실태와 관련, 노사 당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노측 토론자로 각급 연맹단위가 참석하고 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IT연맹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사측도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으나 그 내용이 터무니 없어 참석자들의 실소를 머금게 했다. 사측은 KT에서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선통신사업의 경우 국가간통신사업으로서 그 공익성의 정도가 상당하고, 무선통신이 있지만 대체재로서 가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서비스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핵심업무 범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최소업무 담당 인원으로 22,600명을 추천하고 있다. 부서별 인원은 고객센터(A/S)는 11,000명, 초고속 전송에는 3,600명, 고객센터에는 2,000명, 네트워크에는 6,000명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서의 100%를 모

두 최소업무로 규정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노동조합은 필수공익사업장과 직권중재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소서비스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을 전제하고 있는 법제도적 취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원은 모두 철수해도 통신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 파업 경험을 볼 때, 현재의 협정근로자라도 충분히 최소업무의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올 4월부터 노동부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공익사업

지업무(필수유지업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일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생존필수적 업무'로 파악 때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가까운 정도로 곤란'하며 업무 특성상 '연속공정의 성격'을 갖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을 통한 여타 업무만의 파업 또는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업무의 상당한 축소를 동반하는 파업이라는 구도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명분상의 파업 내지 노조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업만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설정도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정지나 폐지가 공공의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들었다. 이때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일정부분 가능하거나 평상시 업무량의 상당한 축소운영을 동반하는 파업이 가능해 필수유지업무의 법제화도 가능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다만 대체가 비교적 쉬우면 최소 범위를 상정하고 빈대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가까운 때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유지가 강제되는 경우 이 업무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법제화하고 있는 외국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명, 신체,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두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정법적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공공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영역에서도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 및 노사관계의 상황에 따라 실정법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사 자율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합의가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전기노선연계 운송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례를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뿐이고 그 외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 영국 및 일본은 최소업무제도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긴급조정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및 하·폐수처리사업도 일반적으로 생존필수적 업무영역으로 인식해 파업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실정법적 규율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에너지 생산·공급사업도 전기나 가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인이나 벨기에에서 파업을 규제하는 범규를 두지만 실제로 파업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석유정제나 공급에 대해 최소업무유지제도를 두는 경우는 스페인, 그리스 정도이고 증기·온수 등 집단에너지에 대해 명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전기노선 여객운수사업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명절·연휴, 출·퇴근시간대 등 혼잡시간대에 정상근로 총량을 지정해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운송노선은 최소한의 업무총량을 고려하고 운송수단의 동시·다발적 파업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업무만을 최소유지업무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 및 하·폐수처리사업은 생존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상수를 공급하고 수도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 그리고 하·폐수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 전체에 대해 최소유지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수장 등 홍수기의 다목적댐 수위조절 업무나 수도법의 '현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급수지원' 업무도 최소유지업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업·농업용수 공급은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를 정하되 노사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통신, 중앙통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영업 등 업무 전반이 핵심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계속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가스산업 역시 유사한 의견을 냈다. 증기·온수 사업은 지역난방의 경우 파업시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불편이라는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 내 또는 업계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하지 않는 이상 대체 가능성도 일정 정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추모사업위원회 내규 마련

노동조합은 24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KT노동조합 추모사업위원회 내규'를 제정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추모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관계자 위주의 행사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추모사업을 위해서는 추모자를 집단화하고 이들을 기념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마련하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추모자의 선정에서부터 추모행사 등 제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항구적인 추모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모사업위원회 내규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경기도 안성 일죽 인근의 유토포아추모관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06 상반기 회감 "엔민한 행정처리 됐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진행된 2006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10월 27일 총평을 끝으로 마쳤다.

회계감사 김진욱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회계장표류 정리, 증빙서 구비, 감사기초자료 준비 등 재정분야의 행정처리가 원만하게 됐다"면서도 "행정지도 사항의 개선이 미흡해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업·농업용수 공급은 최소한의 업무총량 범위를 정하되 노사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통신, 중앙통제, 설비의 유지·보수 및 영업 등 업무 전반이 핵심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계속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가스산업 역시 유사한 의견을 냈다. 증기·온수 사업은 지역난방의 경우 파업시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불편이라는 측면이 부각될 것이라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재석위원장은 "앞으로도 회계규정에 부합하면서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대 집행부에서 그랬듯이 9대에도 노동조합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독거노인에게 내복 전달

비탄한 중앙상집은 2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내의를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동절기를 앞두고 가족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복 400여벌을 마련했다.

지재석위원장은 "분당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됐다"면서 "추운 겨울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내의라도 전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되어야"
"최소유지업무도 현재의 협정근로만으로 가능"

한 최소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측의 논리가 허무맹랑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노조원은 모두 기술자들이고, 기술자들은 모두 최소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조원은 누구라도 파업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논리이다. 최소서비스 도입이 공익을 절대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일정부분 보호하면서 노동권의 실현

의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선보였다. 실태조사에는 KT를 비롯 전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전력 등 에너지 공급사업,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우정, 수도 및 폐·하수처리사업, 은행사업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최소유

더 넓게 더 힘차게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총파업투쟁 승리!
2006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2일(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
전야제 11월 11일(토) 오후 7시 서울 시청광장
산업별대회 11월 11일(토), 12일(일) 대회장 주변



11월 15일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격!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대오의 막바지 총력투쟁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31일 제17차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하여 총력집중하기로 거듭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공안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대내외적 정세에 대해 공유하고 당면투쟁 지점을 점검하는 한편 11월15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기 위한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7차 투본회의에서는 노사관계민주화 입법안 국회의원 서명 작업,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연장, 시국농성 돌입, 공안탄압과 관련한 투쟁, 총파업 구호 통일, 총파업 상징 및 투쟁 깃발 제작에 관한 지침 등을 확정해 사실상 하반기 총파업투쟁 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노사관계법 의원발의서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늦어도 11월7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그에 앞서 민주노총 임원과 유관연맹 임원이 서명을 분담하되 각 연맹별 2인 이상 조직 배치해 서명을 진행한다. 대체입법의 범위는 노사관계민주화 8대 핵심 요구안(산별, 비정규(특고), 공무원, 복수노조,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전임자, 고용안정, 손배가압류)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대체입법안은 정부입법예고안 내의 주요 개악조항들(복수, 전임자,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 근기법 사항, 조정제도 개편 등)에 대한 대응입법과제, 그리고 산별 교섭 법제화 등을 포함한 쟁취입법 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을 11월14일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총파업 당일인 15일 최종집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탄압때문에 투표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들과 11월3일까지 찬반투표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단행됐다.

이와 함께 투본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투표 참가자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조직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직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맹과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권고와 자본의 탄압이 발생할 시에는 총연맹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투쟁을 즉시 전개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시국농성 돌입과 관련하여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의 긴박함을 감안해, 한미 FTA범국본 차원의 시국농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키로 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하루농성을 전담하되 11월1일부터 12월 초순까지 북요일을 기해 민주노총 가맹조직별로 농성에 참여한다는 방침



“우리 노동계급에게는 극악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잘못된 힘과 폭력에 대항해 가열차게 투쟁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이다. 민주노총 참가규모는 총파업 돌입 전에 총 100명 규모로 하며, 총파업 돌입 후에는 30명 규모로 조정한다. 농성 참가 단위는 해당 날짜의 해당 연맹 임원, 사무처 간부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날짜별 연맹 분담계획을 보면 11월2일,16일,30일에는 건설, 공공, 전교조, 대학, 교수, 비정규교수, 민주택시, 민주버스, 화물통합(준)노조 등이, 11월9일,23일과 12월7일에는 금속, 보건, 화학섬유, IT, 서비스, 사무금융, 언론, 여성, 시설, 공무원노조 등의 조직들이 결합해 시국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또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 무력화를 노리고 있는 신공안정국의 공안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투쟁으로 대응하며 진보운동진영의 통일단결에 의거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세부적으로는 11월1일 공안탄압모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금강산 기행단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1월25일 반전평화실현 공안탄압 분쇄 집회 등을 이어 개최하여 신공안탄압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을 탄압할 경우, '공안탄압 분쇄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

고, 민중시민사회단체들과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대응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총파업 구호 통일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구호를 폐기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 “정리해고 확산 법안 저지!” “노동3권 말살 법안 저지!”를 개선된 구호로 통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로드맵”이라는 표현이 대조적이지 못해 총파업의 성격을 직관적, 대중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구호를 모든 대회제목, 구호 등 공식적 표현에 사용해 대중적 전달력을 최대한 높이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연맹별 총파업 기금 배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단락 지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차 회의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실제 조합원수를 조정할 것과, 10월27일 연맹 사무처장단회의에서 전 결정사항의 2/3 수준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한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11월15일까지 분담된 전액을 반드시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11월2일부터 4일까지 5개 연맹, 1개 지역본부 공동주최 금강산 통일기행을 시작으로 해,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된 직후(12월말 예상)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한반도 평화 실현! 대북제재 반대! 노동자 금강산 통일기행’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차기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오는 11월9일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점검의 건과 총파업투쟁 전략전술 최종확정의 건을 안건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제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의 깃발이 높이 오르고 있다. 우리 노동계급에게는 극악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잘못된 힘과 폭력에 대항해 가열차게 투쟁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민주노총 11월15일 총파업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의 열망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9.11 야합 통한 노사관계로드맵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관계의 재편이다.

직권중재조항은 KT를 비롯한 지하철, 철도, 발전, 병원, 정유 등의 합법 파업을 원천 봉쇄해왔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있어 “직권중재회부, 불법파업, 구속수배, 해고”의 순서가 공식화 되버린 것은 이러한 직권중재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직권중재조항은 노사자율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측의 교섭해태만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은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기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최소업무유지 도입 등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대체근로의 전면적인 허용과 노동약법인 긴급조정권을 강화하려는 본색을 보이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공 노조활동의 무력화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기업별노조 체계와 활동에 익숙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전임자는 노조의 단결력과 활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임자 수의 축소는 곧바로 노동조합 일상활동, 조직활동의 약화로 이어지고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ILO도 전임자 수와 급여 규모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중



요한 제한이 되므로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사용자의 대항권을 크게 강화시켜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폐쇄를 허용해준다.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조차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위축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각종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의 대안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과 8대 핵심요구를 설정하고 이번 총파업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병’이다

자유무역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외의존도 70%인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개방은 불가피하고 대국 미국과의 개방은 절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는 부분적 무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며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은 미국과의 FTA협정 체결을 부결시켰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온 우리 역사를 볼 때 한미 FTA는 결국 경제와 정치, 군사안보 등 모든면에서 미국

에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차 한미FTA 체결되고 4-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미FTA 체결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나타낸 예상표이다.



해당 산업	협상결과	해당연맹	예측결과	피해 예상표
의료 서비스	의료시정전면개편 민간의료도입 영리법인화	보건 공공	대규모 구조조정 의료공공성 위협 건강보험체계 위협	★★★★
교육 분야	교육시장개방 영리법인화요구 미국분교 설립	전교조 대학 교수노조	대규모 구조조정 교육공공성 위협 교육예측학 초래	★★★
금융 시장	이행의무조항 폐지 무역 및 투자분쟁 해결절차	사무금융 금융노조	자본시장 예측 대규모 구조조정	★★★★
농업	농업시장 개방	농협노조 축협노조	단위농협 통폐합 농업붕괴/구조조정	★★★★★
제조업	제조업 양극화 유해산업 열악	금속연맹 화학연맹	비정규직 양산 영세사업장 붕괴 석유화학 구조조정	★★★★
민간 서비스	대규모 자본유입 외국자본 경쟁격화	서비스 연맹	대규모 구조조정 비정규노동 양산 국내영화산업 좌절	★★★
공공 부문	외국자본 경영인식 공기업 사유화강요	공공연맹	기간산업 사유화 대규모 구조조정	★★★
정보 통신	외국인지분제한폐지 외국자본 경쟁참여	IT 연맹	공공성 후퇴 정보통신업 개편	★★★★
방송	방송법 개방	언론노조	방송공공성 약화 민영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혁하라!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생산과 사회발전은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한 사회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라면, 산재로 인한 사망률과 취업 노동자중 산재보험 적용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한 노동현장에 내몰린 노동자가 1/2에 이른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사업주들의 요구대로 산재보험료를 대폭 삭감했고, 당연히 산재보험제정이 취약해졌다. 이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심각한 때문에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재해에 노출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 먼저 치료해주고 나중에 정산해야 한다.
산재 당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는 기간 3개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재보험을 모르는 노동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업성질병, 산재승인 등 변호사를 통해야 해결되는 산재처리가 간편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 산재심사를 투명하게 하도록 심사평가원을 독립해야 한다.
산재승인과 치료조차 제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심사평가원과 서비스업으로 구분 한다.
• 원직복직을 최우선으로 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업성 질병까지도 치료와 함께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 확대는 정규직을 공격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법안>

비정규 노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노동시장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은 딱 2년!>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사유 제한’을 두지 않고 기간만 최장 2년까지 사용하고, 2년경과 시점에서 고용을 지속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데 기간제노동자들이 2년 경과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 대답은 ‘불가능’이다. 사업주가 기간제 사용 2년경과 후 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3권의 무권리 상태를 강요하고, 정규직 노동시장을 공격하는 비정규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비정규 법안 통과를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곧 정규직 시장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은 합법과건이든 불법과건이든 가리지 않고 2년의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만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 원이하)부와 의무만 있다. 고용의무제도로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계속고용이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용자의 불법적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어야만 우리는 자본과 정권을 이길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내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갈라놓고, 차별로 지배하려는 것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곧 노동계급의 단결을 의미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남의 일로 생각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